

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

정 관



정 관

제 정: 1955. 10. 15(보부제5호)

개 정:

- 1차 개정: 1963. 06. 28.(보부제 63-호)
- 2차 개정: 1966. 08. 22.(보부제 66-호)
- 3차 개정: 1971. 05. 13.(보부제 1030호)
- 4차 개정: 1972. 04. 12.(보부제 1352호)
- 5차 개정: 1979. 02. 09.(보부제 5-43호)
- 6차 개정: 1980. 09. 05.(서울시제 80-2호)
- 7차 개정: 1981. 03. 05.(서울시제 81호)
- 8차 개정: 1984. 07. 16.(서울시제 82호)
- 9차 개정: 1984. 05. 30.(보부제 5-47호)
- 10차 개정: 1985. 12. 09.(서울시제 85-23호)
- 11차 개정: 1986. 06. 13.(서울시제 86-9호)
- 12차 개정: 1989. 08. 31.(보부제 5-56호)
- 13차 개정: 1992. 04. 22.(보부제 5-60호)
- 14차 개정: 1992. 10. 14.(서울시제 92-26호)
- 15차 개정: 1994. 07. 15.(보부제 5-63호)
- 16차 개정: 1997. 04. 04.(보부제 5-69호)
- 17차 개정: 1998. 12. 05.(보부제 5-71호)
- 18차 개정: 2000. 04. 29.(서울시제 2000-8호)
- 19차 개정: 2000. 08. 17.(서울시제 2000-20호)
- 20차 개정: 2001. 01. 27.(서울시제 2001-2호)
- 21차 개정: 2001. 03. 15.(서울시제 2001-8호)
- 22차 개정: 2001. 08. 03.(서울시제 2001-28호)
- 23차 개정: 2007. 12. 07.(청소년담당관-21884)
- 24차 개정: 2008. 06. 16.(가정복지과-7563)
- 25차 개정: 2009. 03. 26.(가정복지과-5429)
- 26차 개정: 2010. 01. 22.(가정복지과-1520)
- 27차 개정: 2011. 01. 18.(가정복지과-1518)
- 28차 개정: 2011. 02. 07.(가정복지과-2766)
- 29차 개정: 2012. 08. 24.(가정복지과-20306)
- 30차 개정: 2013. 02. 26.(가정복지과-6216)
- 31차 개정: 2013. 03. 26.(여성가족과-2955)
- 32차 개정: 2014. 01. 02.(여성가족과-27)
- 33차 개정: 2014. 04. 22.(여성가족과-16806)
- 34차 개정: 2014. 08. 11.(여성가족과-30372)

35차 개정: 2015. 11. 12.(여성가족과-38703)
36차 개정: 2016. 02. 29.(여성가족과-8292)
37차 개정: 2017. 03. 03.(여성가족과-7619)
38차 개정: 2017. 12. 20.(여성가족과-41445)
39차 개정: 2018. 02. 20.(여성가족과-5472)
40차 개정: 2018. 10. 01.(여성가족과-29227)
41차 개정: 2019. 02. 28.(교육아동청소년과-3292)
42차 개정: 2019. 05. 23.(교육아동청소년과-8063)
43차 개정: 2019. 12. 19.(교육아동청소년과-19124)
44차 개정: 2020. 02. 10.(교육아동청소년과-2541)
45차 개정: 2020. 03. 28.(교육아동청소년과-6230)
46차 개정: 2020. 05. 29.(교육아동청소년과-9596)
47차 개정: 2020. 07. 17.(교육아동청소년과-12744)
48차 개정: 2021. 01. 11.(교육아동청소년과-618)
49차 개정: 2021. 03. 11.(교육아동청소년과-4604)
50차 개정: 2021. 04. 13.(교육아동청소년과-6568)
51차 개정: 2021. 08. 05.(교육아동청소년과-12911)
52차 개정: 2022. 01. 07.(교육아동청소년과-633)
53차 개정: 2022. 03. 14.(교육아동청소년과-4952)
54차 개정: 2022. 05. 30.(교육아동청소년과-9555)
55차 개정: 2022. 12. 23.(교육아동청소년과-21696)
56차 개정: 2023. 03. 16.(가족정책과-13926)
57차 개정: 2023. 08. 01.(가족정책과-26445)
58차 개정: 2023. 11. 20.(가족정책과-35871)
59차 개정: 2024. 01. 29.(가족정책과-2796)
60차 개정: 2024. 07. 24.(가족정책과-20863)
61차 개정: 2024. 12. 13.(가족정책과-33753)

제1장 목적 및 사업

제1조(목적) 이 법인은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줌으로써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) ① 이 법인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유지 경영한다.

1. 아동옹호사업 및 이를 위한 국민인식 캠페인
2. 육아시설, 영유아보육시설, 심신장애인 요양시설 설치운영
3. 아동과 가정 및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사회복지관 운영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과 이에 수반되는 사업
4.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훈련사업, 심신장애인복지사업(특수학교 설치운영) 및 이에 수반되는 사업
5. 아동을 위한 의료지원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사업
6. 아동복지시설, 심신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및 해외아동지원사업
7. 아동 및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출판, 홍보사업
8. 요보호아동을 위한 국내입양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사업(아동상담, 거택구호, 위탁보호, 일시보호)
9. 불우이웃결연사업
10. 어린이찾아주기사업
11. 아동학대 예방사업
12. 노인종합복지관운영 및 노인요양시설운영
13. 재가노인복지사업
14.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사업

② 이 법인은 전항의 사업운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부동산 임대사업
2. 출판사업
3. 신문판매사업
4. 교육 콘텐츠 개발, 유통 및 판매, 교육 관련 행사·공연 주최 등 기타 교육사업
5. 아동의 안전 강화와 효과적 보호를 위한 제품의 개발, 유통 및 판매

6. 차(茶)류·과실류 수입, 유통 및 판매
7. 브랜드 홍보상품 및 홍보저작물의 제작·판매 및 제공
8. 의류, 문구 및 팬시용품 제작·유통 및 판매
9. 공정 무역 제품 수입·유통 및 판매
10. 환경(자원재순환)을 위한 물품 매입 및 판매
11. 통신판매업 및 통신판매중개업
12. 행사 및 공연 수익사업 활동
13. 커피 및 다류, 기타 음료 제조·판매 및 제공
14. 빵류, 과자류, 기타 디저트 제조·판매 및 제공
15.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

제2장 명칭 및 사무소

제3조(명칭) 이 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(영문표기 ChildFund Korea, 이하 “법인”이라 칭한다.)이라고 한다.

제4조(사무소)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0에 둔다. 다만, 이 사회의 결의로써 국내외에 분사무소 등을 설치할 수 있다.

제3장 자산 및 경영

제5조(자산)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
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다.

1. 부동산
2.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
3.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

③ 기본재산의 목록 및 가액은 별지와 같다.

④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
제6조(기본재산 처분) 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각, 담보, 양도, 교환, 기부 등 기타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7조(수익자금예치) 이 법인의 예산 중 현금은 우편관서나 금융기관에 예치함

을 원칙으로 한다.

제8조(회계연도)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9조(예산) 이 법인의 예산은 매회계연도 개시 전에 대표이사가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은 후 집행한다.

제10조(결산) 이 법인의 결산은 대표이사가 세입·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법인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법인의 임원이 아닌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 경과 3개월 이내에 개최되는 정기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4장 임직원 및 회원

제11조(임원) ① 이 법인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.

1. 이사 11명 (대표이사 1명 포함)
2. 감사 3명

② 제1항의 이사 중에서 총무이사과 재무이사 각 1인을 둘 수 있다.

③ 전항의 모든 임원은 보수 없이 봉사한다. 다만, 이 법인을 대표하거나 이사회에 요청으로 행한 여행 등 업무에 지출한 경비는 실비 보상한다.

④ 이사회에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12조(임원의 취임) 전조의 임원은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이 법인의 이념과 목적에 찬동하는 인사로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하고 주무장관에게 임면사항을 보고한다.

제13조(이사회에 임무)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 법인의 중요 정책과 중요 업무를 심의 결정한다.

제14조(대표이사) ① 대표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여 이사회에 의장이 된다.

② 대표이사는 이사 중 이사회에서 선출된다.

③ 대표이사가 결원일 때는 이사회는 지체없이 대표이사를 보선해야 한다.

④ 대표이사가 유고 시는 대표이사가 지명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⑤ 만일 대표이사가 사전에 지명한 이사가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5조(회장) ① 이 법인에 회장을 두며 회장은 이사회 의결사항 집행과 법인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업무를 처리한다.

②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③ 회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, 정책제안, 질의에 대한 답변 등 모든 사항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④ 이 법인에 명예회장 1명을 둘 수 있다.

⑤ 제2항에 관한 선임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제16조(감사) ① 감사는 이 법인의 업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.

② 제1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.

제17조(고문) 이 법인은 사업전반에 관한 자문에 응할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다.

제18조(회원) ① 법인의 회원이란 법인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여 법인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후원회비(금품 또는 재능)를 납부하는 자를 의미한다.

②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.

1. 법인의 운영 및 후원회비의 사용 내역을 보고받을 권리
2. 법인의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권리
3. 법인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하여 의견 개진 등으로써 직·간접적으로 참여할 권리
4. 후원회비를 납부할 의무

③ 회원의 종류 및 기타 권리·의무는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19조(임원의 임기) 이 정관 제11조의 임원 중 이사의 임기는 3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속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20조(임원의 보선) 이 정관 제11조의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결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 보선한다.

제21조(겸직금지) 이 정관 제11조의 임원은 이 법인이 지원하는 법인이거나 사업체의 장을 겸직할 수 없으며 또한 이 법인의 지원을 받는 법인이거나 시설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제5장 이 사 회

제22조(이사회)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
1. 정기이사회는 연2회 개최하며 2월, 12월에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.
2.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이상 또는 이 정관 제16조에 의한 감사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.

제23조(이사회 소집) 이사회 소집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개최일 7일 이전에 서면으로 일시, 장소 및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한다. 다만, 국외에 거주하는 이사에게는 이사회 개최 20일 전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.

제24조(정족수)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동으로 의결한다.

제25조(의결사항)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임원선출
2. 회장선출
3. 정관변경
4. 사업계획 및 예산, 결산의 승인
5. 재산의 취득 및 변경
6. 공인회계사의 선정
7. 고문 및 명예회장의 추대
8. 기타 운영상 중요사항

② 이 법인이사가 임직원으로 있거나 이 법인이사와 어떤 재정적인 이해가 있는 단체나 기관과 이 법인과 재산거래가 있어 이사회 의 결을 요할 때 그 관련 이사는 그 이사회 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참석이사 전원은 그 관련 이사의 재정적인 이해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의에 들어 가야하며 전원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한다.

③ 이 정관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.

제26조(의사록)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이사회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참석이사 전원의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.

제27조(학교운영위원회 설치) 이 법인이 유지 경영하는 한사랑학교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초·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.

제6장 공고의 방법

제28조(공고의 방법) ① 이 법인이 법령 및 정관과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관련 법령에 정한 위치(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, 정기 간행물 등)에 게재한다.

② 제1항의 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.

제7장 해산 및 시행세칙

제29조(해산) 이 법인을 해산코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30조(잔여재산 처리) 이 법인 해산시의 잔여재산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후 이 법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사회복지법인에게 기부한다.

제31조(세칙)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및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이를 정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다.

부 칙

1. 이 정관은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2. 이 정관 시행 당시의 정관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한 것으로 보며 개정된 정관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하므로써 이 정관 시행 당시 이미 3회 이상 연속하여 임원으로 취임하고 있는 임원은 다시 연임할 수 없다.
3.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재단의 취업규칙(인사, 보수규정포함) 사회복지관 운영, 한사랑학교 규칙 및 학교운영위원회 규정등 재단의 제반규정과 법령에서 직접 위임한 사항을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